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67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김문수・박 정・이기헌

염태영 · 서영교 · 박홍근

박정현 · 오세희 · 김남근

김남희 · 이용선 · 박주민

이워택 • 황정아 • 김동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유아교육법」의 개정)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자격기본법」의 개정)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8조제1호"로 한다.

제5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학원 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으로 본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6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7조(교원의 자격) ① (생 략)	제17조(교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	
용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영유아보육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16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	
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유아교육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8조의2(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자격기본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18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	
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u><삭 제></u>
권되지 아니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생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3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	<u>제18</u> 조제 <u>1호</u>
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제9조(결격사유 등)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	
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u><</u> 삭 제>
권되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